

심사보고서

2024. 4. 25.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42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정찬식)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개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23. 5. 16. 공포 / ‘24. 5.17. 시행)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인용 조항 정비
 - “문화재” 을 “국가유산” 으로 용어를 정비함
 - “향토문화재” 을 “향토문화유산” 으로 용어를 정비함
- 개별 상위법 제·개정 등 반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3. 12. 22. 공포 / ‘24. 1. 1. 시행)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
 -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2024. 3. 28.) 결과,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 8개 조문으로 일괄개정조례안을 재구성함.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
- 한편, 일괄개정방식은 둘 이상의 조례를 하나의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부칙 개정방식(다른 조례의 개정) 둘째, 본칙 개정방식(일괄개정)이 있음.
 - 본 조례안과 같이 본칙 개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 본칙에 포함하여 일괄개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입법에 속하는 방법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첫째, 개정되는 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고 둘째,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같으며 셋째,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는 입법기술임.
 - 국회에서도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개정한 예가 있으며 정부¹⁾ 및 다른 자치단체²⁾도 극히 예외적인 개정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방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입법기술로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정비와 관련 없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일괄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 이질적인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의 개정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 개정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끝.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 “향토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유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를“(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향토문화재의 지정 등)”을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문화재가 향토문화재로서의”를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문화유산을”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문화재는”을 “향토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

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향토문화재와”를 “향토문화유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5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다목 중 “국장·소장”을 “국장·단장·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소장”을 “국·단·소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장”을 “국장, 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수 량 :

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u>향토문화재</u>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u>를 말한다.</p> <p>2. “<u>향토문화재</u>”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지정문화재</u>가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u>문화재</u>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u>문화재</u>를 말한다.</p>	<p>제1조(목적) ----- ----- <u>향토문화유산을</u> ----- ----- -----.</p> <p>제2조(정의) ----- -----.</p> <p>1. “<u>문화유산</u>”이란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u>문화유산을</u> -----.</p> <p>2. “<u>향토문화유산</u>”이란 법 제2조제3항-----<u>지정문화유산</u>이 ----- ----- <u>문화유산</u> 중 ----- ----- ----- ----- <u>문화유산을</u>-----.</p>

제3조(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
-----.

제4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

----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

1. 향토문화유산-----

2. 향토문화유산-----

3. 향토문화유산-----

4. 향토문화유산-----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문화유산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생략)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향토문화재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1. -----
-- 문화유산-----

2. 문화유산-----

④ (현행과 같음)

⑤ -----

-- 문화유산 -----
-----.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
----- 향토문화유산
을 -----.
문화유산-----

-----.

② ----- 향토문화유산을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재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2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효력 발생 시기)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
----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 지정문화유산으-----
----- 향토문화유산 지정-----.

③ -----

문화유산 -----
-----.

제12조(고시 및 통지) -----
----- 향토문화유산을 -----
----- 문화유산의 -----.

제13조(효력 발생 시기) 향토문화유산-----

-----.

제14조(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등) ① 향토문화재는 소유자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

제14조(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

리 등) ① 향토문화유산은 -----

-----.

② ----- 향토문화유산-----

-----.

1. 향토문화유산-----
--
2. 문화유산 -----

③ ----- 향토문화유산-----

-----.

④ ----- 향토문화유산과 --

-----.

⑤ ----- 향토문화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작성·보존)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①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5조(점검) ----- 향토문화유산을 -----
-----.

제16조(기록의 작성·보존) -----
---- 향토문화유산-----
-----.

제17조(경비 지원) ① 향토문화유산-----
-----.
----- 향토문화유산-----
-----.

② -----
----- 향토문화유산-----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신·구별표대비표 (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향토문화재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서</p> <p>○ 명 칭 :</p> <p>○ 소재지 :</p> <p>○ 수 량 :</p> <p style="color: red;">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 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p> </div>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발급 번호</th> <th rowspan="2">발급 년월일</th> <th rowspan="2">향 토 문화재 번호</th> <th rowspan="2">지정 번호</th> <th rowspan="2">지 정 년월일</th> <th rowspan="2">지정 내역</th> <th rowspan="2">소재지 또는 보관장소</th> <th colspan="2">소유자</th> <th colspan="2">관리자</th> </tr> <tr> <th>주소</th> <th>성명</th> <th>주소</th> <th>성명</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향 토 문화재 번호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하 생략)											<p>[별지 제1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향토문화유산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p> <p>○ 명 칭 :</p> <p>○ 소재지 :</p> <p>○ 수 량 :</p> <p style="color: blue;">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p> </div>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발급 번호</th> <th rowspan="2">발급 년월일</th> <th rowspan="2">향 토 문화유산 명</th> <th rowspan="2">지정 번호</th> <th rowspan="2">지 정 년월일</th> <th rowspan="2">지정 내역</th> <th rowspan="2">소재지 또는 보관장소</th> <th colspan="2">소유자</th> <th colspan="2">관리자</th> </tr> <tr> <th>주소</th> <th>성명</th> <th>주소</th> <th>성명</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향 토 문화유산 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현행과 같음)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향 토 문화재 번호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하 생략)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향 토 문화유산 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p> <p>1.·2. (생략)</p> <p>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p> <p>4. ~ 1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 ----- -----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 --</p> <p>4.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2. (생 략)</p> <p>3. <u>문화재</u>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4. (생 략)</p>	<p>제5조(설치장소)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유산</u> ----- ----- ----- ----- -----.</p> <p>4.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54조----- ----- ----- -----.</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가.·나. (생략) 다. 용역수행 관련 소관 <u>국장</u> · <u>소장</u></p> <p>2. (생략)</p> <p>⑤ (생략)</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국장</u> · <u>단장·소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정책실명제) ①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63조의5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용역결과</p>	<p>제12조(정책실명제) ①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63조의5----- -----</p>

보고서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54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과 강남구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행
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책실명제”란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1조(목적)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63조의5----- ----- ----- ----- -----.</p> <p>제2조(정의) ----- -----.</p> <p>1.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 ----- ----- ----- -----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시행령</u>」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 시행령</u>」 제3조----- ----- ----- ----- ----- -----.</p>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u>실·국·소장</u>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국·단·소장</u>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등)</p> <p>① ~ ③ (생 략)</p> <p>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강남 구 소속 <u>국장</u>과 보건소장으로 한다.</p> <p>⑤ ~ ⑦ (생 략)</p>	<p>제6조(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국장, 단장</u>-----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일괄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7급 차경미 (02-3423-5483)